

# 2022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의무5급, 수의7급, 수의연구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계급	직렬(류)	인원	임용예정기관 및 인원
	합계	38	
5급	의무(일반의무)	4	도 일괄 4 (창원 3, 진주 1)
7급	수의(수의)	29	도 일괄 29 (도 12, 진주 2, 통영 1, 사천 2, 김해 2, 양산 1, 의령 1, 고성 2, 하동 2, 산청 1, 함양 1, 거창 2)
연구사	수의연구(수의)	5	도 5

※ 도 일괄모집(의무5급, 수의7급)은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치하므로, 희망하는 임용기관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증

## 3.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자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2. 2. 21.(월) ~ 23.(수) [3일간] ※기간 중 업무시간 내(09:00~18:00)	'22. 3. 3.(목)	'22. 3. 14.(월) ~ 15.(화)	'22.3.18.(금)

※ 시험 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발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합니다.

## 4.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자격

계급	직렬(류)	응시 자격
5급	의무(일반의무)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고 2년 이상 보건·의료 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치과의사와 한의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의료 또는 보건 관련 분야 근무경력(수련의 및 전공의, 공중보건 의사, 군의관 포함)</li> </ul>
7급	수의(수의)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연구사	수의연구(수의)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라. 거주지,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 (우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양대로 300,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다. 응시수수료 : 의무 5급 10,000원, 7급·연구사 7,000원 (경상남도수입증지)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면제 받을 경우 경상남도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함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응시표 수령을 위해 반드시 반신용 봉투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를 동봉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접수시 유의사항

- 「도 일괄모집」(의무5급, 수의7급)은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하므로, 희망하는 임용기관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별첨1]의 서식 작성 (응시수수료는 경상남도수입증지 부착)

- ※ 경상남도수입증지는 경남도청 및 경상남도 소재 시·군청 내 금융기관에서 구입가능
- ※ 우편접수의 경우 경상남도수입증지 대신 우체국의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금액)로 대체 가능
-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응시수수료로 미인정

나. 이력서 1부 : [별첨2]의 서식 작성

다. 자기소개서 1부 : [별첨3]의 서식으로 1장에 작성 후 제출

라. 경력증명서 1부(의무 5급 지원자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마.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의무 5급 지원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하되,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바. 면허증(수의사 또는 의사) 사본 1부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별첨4]의 서식 작성

- ※ 모든 서류는 6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의 공증된 서류만 인정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가. 면접시험일까지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시간 이외에는 반드시 착용)
- 라. 응시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 감염병예방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확진 및 자가격리 중인 응시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생에 한해,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는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첨부)에 따라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나.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서 복수 직렬 원서접수는 불가합니다.
-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된 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이 관련 법령에 의거 제한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간 전출 제한)
-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자.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재합니다.
- 차. 2023년도부터 수의 관련 직렬(수의7급, 수의연구사)은 필기시험을 시행합니다.

**▶ 수의 관련 직렬 시험 절차 변경 사전 안내 (2023년부터 시행) ◀**

구 분	시험 절차	
	현 행	개 정
수의7급, 수의연구사	필기시험 면제	<b>필기시험 실시</b>  ◎ 필기시험 과목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시험 시기는 필기시험 시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055-211-3521)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끝.